

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1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세부사업, 2,944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
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공무원주거안정기금			
일반예산(재무활동)	3,755	6,699	2,944
예치금	3,755	6,699	2,944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 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	증감
계	19,262	22,206	2,944
전입금	9,200	9,200	0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7,740	7,740	0
예치금	2,280	5,224	2,944
이자수입	41	41	0

<지출 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	증감
계	19,262	22,206	2,944
용자성비	15,500	15,500	0
기본경비	7	7	0
예치금	3,755	6,699	2,944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후생팀 김대하 (☎ 2133-5771)